

• 21세기 미래문화도시 • 더불어 행복도시 • 사람중심 열린도시



연수구보



발행·편집인:연수구청장 / 발행처:인천광역시 연수구 / 주소: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(우)21967 ☎ 749-7392 / FAX 749-7399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부록 제1321호 2022. 7. 29.(금)

【고 시】

○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1436호(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) 1

회							
람							

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(공포)

제 명	주 요 내 용
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	1. 제안이유 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의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여 구민의 납세 편의 증진 및 과세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. 2. 주요내용 ○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9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의 세액공제 금액 조정(제7조제2항) -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 시 : 고지서 1장당 800원 세액공제 -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모두 신청 시 : 고지서 1장당 1,600원 세액공제

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이 재 호

2022. 7. 29.

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1436 호

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

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신용카드자동이체”를 “신용카드 자동이체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150원”을 “800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“500원”을 “1,600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세(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구세는 제외한다)에 대하여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 방식 및 「지방세징수법」 제23조에 따른 <u>신용카드자동이체</u> 방식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계좌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부과할 해당 구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.	제7조(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신용카드 자동이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<u>150원</u>	1. ----- ----- ----- : ----- <u>800원</u>
2.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: 고지서 1장당 <u>500원</u>	2. ----- ----- : ----- <u>1,600원</u>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4조(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<u>필요한</u>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제14조(규칙) ----- <u>필요</u> ----- --.